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

◇ 제 · 개정 이유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인 영세개인발명가의 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소득수준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이 상담센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원공백을 해소하며, 그 밖에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등 정비를 통해 본 고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◇ 주요내용

가. 영세개인발명가의 소득기준을 월수입 220만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%로 변경(제2조제1호)

나.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던 지원공백 해소(제2조제2호)